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27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8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9누59754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1. A 유한회사
	2. B 유한회사
	3. C 유한회사
	4. D 유한회사
	5. E 유한회사
	원고들 [redacted]
	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1. [redacted]구청장
	[redacted]
	2. [redacted]구청장
	3.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	4. [redacted]시장
	5. [redacted]구청장
	[redacted]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9. 9. 20. 선고 2019구합58285 판결
변 론 종 결	2019. 12. 20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27

판 결 선 고 2020. 2. 7.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

이 판결 이유는,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3면 위 도표 내 5행의 "4,824㎡"를 "4,824㎡, 건물 404.94㎡"로, "2,200,000"을 "2,200,000,000"으로, 7행의 "535,000,000"을 "1,268,000,000"으로 고친다.

○ 3면 아래 도표 내 5행의 "3,300,000"을 "4,400,000"으로 고친다.

○ 4면 도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	원고	경정청구액(원)			피고	거부처분일
		취득세	지방교육세	합계		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27

1	A	79,320,000	15,864,000	95,184,000	[redacted]구청장	2018. 8. 13.
2	B	1,900,600	1,330,420	3,231,020	[redacted]구청장	2018. 7. 25.
3	C	26,400,000	5,280,000	31,680,000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	2018. 8. 8.
4	D	67,396,090	13,479,220	80,875,310	[redacted]시장	2018. 7. 25.
5	E	15,216,000	3,043,200	18,259,200	[redacted]구청장	2018. 8. 16.
합계		190,232,690	38,996,840	229,229,530		

○ 4면 6행(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)의 "기재"를 "각 기재"로 고친다.

○ 7면 1행의 "있으므로, 원고가"를 "있으므로[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은 일정한 요건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이다(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두51719 판결 참조)], 원고들이"로 고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재영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27

판사 이승철

판사 김제욱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27

표

	원고	경정청구액(원)			피고	거부처분일
		취득세	지방교육세	합계		
1	A	79,320,000	15,864,000	95,184,000	[redacted]구청장	2018. 8. 13.
2	B	1,900,600	1,330,420	3,231,020	[redacted]구청장	2018. 7. 25.
3	C	26,400,000	5,280,000	31,680,000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	2018. 8. 8.[1]
4	D	67,396,090[2]	13,479,220	80,875,310[3]	[redacted]시장	2018. 7. 25.
5	E	15,216,000	3,043,200	18,259,200	[redacted]구청장	2018. 8. 16.
합계		190,232,690[4]	38,996,840	229,229,530[5]		

1) 소장 및 항소장 기재의 '2018. 8. 13.'은 오기로 보인다(갑 제14호증 참조).
2) 소장 및 항소장 기재의 '67,393,090'은 오기로 보인다(을라 제1호증 참조).
3) 소장 및 항소장 기재의 '80,872,310'은 오기로 보인다(을라 제1호증 참조).
4) 소장 및 항소장 기재의 '190,229,690'은 오기로 보인다.
5) 소장 및 항소장 기재의 '229,226,530'은 오기로 보인다.